

전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2109
----------	------

2021년 2월 25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정지권 의원 등 10인

나. 제안일자 : 2021년 1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1년 2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지권 의원)

가. 주 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여객의 준수 사항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를 것, 전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여객자동차의 안전과 위생·방역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확대하고 자발적 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함

나.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 행정지도가 실시되었고, 또한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에서의 안전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은 여객(이용자)의 준수 사항이고 또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임
- 따라서 여객자동차의 안전과 위생·방역에 대한 여객의 인식을 확대하고 자발적 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안전과 위생에 관한 여객의 준수 사항을 추가하도록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

나. 기타사항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서울시장 : 원안 가결

- 촉구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안전과 위생에 관한 여객(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추가하는 것임
- 코로나 19 등 전염병의 대중교통 감염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이용자 인식 개선 및 자발적 준수 유도를 위해 본 촉구 건의안에 원안 동의함

4.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토교통위원회

나. 정 부 : 국토교통부 장관

1) 교통정책과-1873('21.1.29.)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건의안은 버스 및 택시 등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이용객이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르고, 전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위한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이용자 인식 개선과 자발적 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년 8월 12일에 개정²⁾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조치를 이미 시행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된 상태임
- 서울시 버스 및 택시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지침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법률 제17475호, 2020. 8. 12, 일부개정, 시행>

강화 현실을 반영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3) 및 시행규칙 제30조4) 등에 따라 각 수단별 운송약관을 변경하여 마스크 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한 바 있음5)

-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6) 등을 포함한 교통수단 내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및 위생지침을 따르는 것은 여객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음

- 한편 '2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심판위원회에서는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승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운송약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약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8.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2조(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병환자가 승차하는 경우

2.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5. 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6. 시체 및 동물(사업자 또는 다음 승차할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다만,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 및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7. 불결, 악취 등으로 여객의 운송에 장애를 초래하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8. 기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6) 마스크, 코로나 차단 효과 어느 정도?... 직접 실험해보니 : 한국경제('20.10.23.)

- 바이러스 흡입량 80~90% 줄일 수 있는 연구결과 보도

객의 권리 보호와 함께 택시 안전운행을 위한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⁷⁾

-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및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서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7조의2(여객의 준수사항)에서는 교통수단 이용자의 준수사항으로 “안전띠 착용 및 흡연금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반해 서울 도시철도 안전운영 근거가 되는 「도시철도법」 제4조⁸⁾ 및 「철도안전법」 제47조⁹⁾에서는 “다른 이용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고, 「철도안전법」 제49조¹⁰⁾ 및 제50조¹¹⁾에서는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퇴거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통해 도시철도 이용객의

7)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20.10.13.

- 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승객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

8) 도시철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하여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

9)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①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10)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철도안전법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있음

- 따라서 버스 및 택시 등의 운영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내에 이용객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안전 운행 수칙을 따르도록 하는 사항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건의안의 필요성이 인정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시는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차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그 내용은 여객과 차량의 안전 및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탑승객의 승차 또는 물품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통분야 방역 강화를 위하여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 행정지도가 실시되었고, 또한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에서의 안전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은 여객(이용자)의 준수 사항이고 또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 의무와 흡연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여객의 준수 사항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를 것, 전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여객자동차의 안전과 위생·방역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확대하고 자발적 준수 또한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202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